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우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5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담당 직무 내용	근무예정 부서
감사 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 (개방형5호)	1명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산하 기관 감사 - 비위사항 조사 및 처리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반부패) 시책 - 진정 민원 등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	성북구 감사담당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 그 외의 경우는 임용 절차를 통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 임용 예정 시기: 2025. 12월 이후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 기간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 (개방형직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기관의 장의 임용)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결격사유)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주요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1)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
 -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 4)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 5)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무내용, 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경력증명서상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요구일 기준 일반임기제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명시

※ 시간제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4. 근무조건

☐ 임용직급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임기제공무원 (개방형 5호)	90,629천 원	51,513천 원	2026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액은 변경될수 있음

- ※ 월봉급액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 공무원 퇴직연금 등 연금 수급자가 본 시험에 임용된 경우에 그 재직기간 동안 해당 연금 지급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철저히 확인 후 지원

5. 전형 일정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25.10.13.(월) ~ 17.(금) <5일간 09:00~12:00 / 13:00~18:00>
- 접 수 처: 성북구청 6층 행정지원과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 대리접수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를 제거하고 목록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10,000원 상당 성북구 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 : 성북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단, 직무분야 경력 확인이 불가할 경우 경력 미인정)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8.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9.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반드시 지참)
 10.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형식요건심사 합격자 발표	적격성심사 (서류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25.9.25.(목) ~ 10.10.(금)	2025.10.13.(월) ~ 17.(금)	2025.10.22.(수) (예정)	2025.10.28.(화) ※ 별도 통지 예정	2025. 11. 중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 시험 (형식요건심사)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소정의 기준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2. 2차 시험 (적격성 심사)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실시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체검사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성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추가합격자 결정은 임용 전 임용포기, 합격처분의 무효, 취소 등 최종합격자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함)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성북구 내부의 응시자만 있거나,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 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형식요건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 재공고의 경우 예외)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안내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채용부서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02-2241-6586) 또는 담당자 이메일(choaerim@sb.go.kr)로 제출하면(제출 후 확인 전화 바람),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방문 수령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응시자에게 부담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채용부서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 채용담당(☎ 02-2241-43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